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산가족 범주내의 접근이 아닌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함에 따라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시에 과거와 같이 국군포로 10명, 납북자 12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하여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1명과 납북자 2명은 우리측 가족과 상봉하였다. 또한 북한측상봉신청자중 국군포로 1명이 포함되어 우리측 가족과의 상봉이 성사되었다. 상봉행사 이후 10월 16일 개성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 상봉현황(2000년~20010년 6월) (단위: 명)

구 분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기타	상 봉	상봉 가족수
전후납북자	109	17	22	70	16	18가족 (81명)
국군포로	112	15	13	84	13	22가족 (89명)
합 계	221	32	35	154	29	40가족 (170명)

# 3.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후 발생한 납북 자와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 금 지급, 탈북귀화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사망 과 상이의 피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귀화납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납북자문제 실 태조사 납북자가족의 권리침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이 있으며. 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인 정부 고위공무원 등 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 산정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현황

(2010년 6월말 기준/단위: 건)

	피해위	<b>식로금</b>		정착금	H사그	하게
어 부	해군 I-2정	KAL기	기 타	주거지원금	보상금	합계
337	8	10	21	8	9	393

#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2010년 6월말 기준)

구 분	신청(건)	지원결정(건)	지원액(천원)
피해위로금	376	369	11,609,273
정착금·주거지원금	9	8	1,528,320
보상금	8	1	67,604
합 계	393	378	13,205,197

112

이 법의 시행이후 2010년 6월말까지 피해위로금 등 납북피해 지원신청 이 총 393건에 이르렀고, 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여 총 378건, 132억 5백만원(피해위로금 369건, 정착금·주거지원금 8건, 보상금 1건)의 지급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7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188건, 정착금 5건, 보상금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9년 11월 5일에 민간위원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였으며, 2009년 11월 27일 제22차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김호섭 위원을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2010년에도 민간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2010년 4월 8일에 2명을 신규 및 재위촉하였다.

2009년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납북자가족에게 안내서한을 발송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납북자가족이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고령자와 지방거주 납북가족들의 피해위로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신청 납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였다. 인터넷카페를 통해서도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 안내, 각종 신청서 등 민원 서식을 게재하여 납북피해자들의 지원신청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법률에 따른 지원외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납북자 가족에 대해 명절과 연말연시에 쌀과 생필품, 소정의 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납북자가족에게는 사단법인 '사랑담는 사람들'과 동인병원 (동해시 소재)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밖에 통일부 장·차관 등은 납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의 애로사 항을 청취하는 한편, 귀환납북자의 국내 정착을 격려하였다.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09년~2010년 6월)

일 자	위원회	위원회 결과
2009.1.30	제13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5건, 494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198백만원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09.2.27	제14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1건, 346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3건, 528백만원
2009.3.30	제15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7건, 209백만원
2009.4.28	제16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3건, 432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224백만원
2009.6.4	제17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9건, 634백만원
2009.7.3	제18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0건, 323백만원
2009.8.31	제19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7건, 522백만원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2009.10.6	제20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1건, 312백만원
2009.10.30	제21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191백만원
2009 <u>.</u> 11.27	제22차 위원회	위원장 호선, 산정분과위원장 임명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3건, 433백만원 보상금 지급결정 : 1건, 67백만원
2009.12.17	제23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7건, 522백만원
2010 <u>.1.</u> 28	제24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187백만원 정착금(가산금) : 1건, 26백만원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0.2.25	제25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208백만원
2010.3.25	제26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191백만원
2010.4.29	제27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8건, 278백만원
2010.5.27	제28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2건, 407백만원
2010.6.24	제29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21건, 733백만원





의료지원

이동민원 현장

또한, 납북자가족의 피해위로금 신청기한이 2010년 10월 27일인 점을 감안, 피해위로금 신청독려 홍보계획을 수립(2010.5.18)하였으며, 지방버스 내·외부 광고, 통일부 관련 홈페이지 팝업창, 옥외 전광판, 지역 유선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등 해당가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 위로방문(2009.2.6)



귀환 납북자 위로방문(2009.7.31)

#### 4. 6.25 전쟁 중 납북자 문제

6.25전쟁 중 북한은 제헌의원과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납치는 물론 부역 동원과 의용군 충원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강제 동원을 실시하였다. 이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확인된 명부중 최대치는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8만 2,959명이다.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

연번	명 칭	작성주체	작성시기	인 원	존재여부
1	서울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보존
2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보존
3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2년	126,325명	유실
4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년	84,532명	유실
5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보존
6	시하나미 며ㅂ	국방부	106213	11,700명	1권: 보존
	실향사민 명부		1963년		2권: 유실

6.25전쟁 초기부터 1963년까지 정부차원에서 납치자 명부를 수차례 작성하였으나, 국제적 냉전질서 속에서 남북간 대결이 심화되어 생사확인과 송환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정부와 가족들의 노력이 중단되었다. 2000년에 6.25납북자가족단체가 재결성되었으며, 2001년 9월 6일 통일부의 설립허가에 따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설립되어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2006년 9월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제1권을 편찬한데 이어, 2009년 9월 제2권을 발간하였다. 사료집에는 납북자 가족의 증언을 비롯하여 6.25전쟁중 납북과 관련된 국내외의 문서자료를 광범위하게 발

굴하여 수록하였다.

전시납북자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안이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총 4건이 발의되었으나 임기종 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2008년 12월 10일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박선영 의원이 2009년 1월 23일에「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두 법률안은 외교통 상통일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되어 2010년 2월 23일 상임위에서 통합대안이의결되고,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26일「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6.25전쟁 납북사건 진사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6.25 전쟁중 납북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3절 인도적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민간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 2월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지원심사평가단'을 확대 구성하였고, 9월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도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침을 밝혔다.

특히 2009년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문제가 대두되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및 지원 물자의 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물자반출 및 방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지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에는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당국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2009년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179억원, 민간단체를 통해 105억원, 국제기구를 통해 216억원 등총 5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5월 24일 인도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기로 하였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인도적 지원만은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는 바, 수혜대상·지원품목·투명성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

# 1. 당국 차원의 지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쌀·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12월 초부터 일부 대북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내 신종플루 발생 보고를 받고,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 원에서 긴급지원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의주·평양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화하였고, 이에 정부는 북한과 남북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과 손소독제 20만리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북한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해 신속히 지원절차를 진행하여 국회 상임위 보고 및 남북교 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18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1,500만 달러 규모의 타미플루 40만명 분, 리렌자 10만명 분, 2010년 2월 23일에는 손소독제 20만리터를 각각 북한에 전달하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가들이 동행하여 치료제 및 손독제의 사용 방법과 우리의 신종플루 방역을 위한 경험과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북한은 이를 잘 참고하겠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였다.

# 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속되었다.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2000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남북관계의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정부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치료제 사용방법 설명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장거리로켓 발사 및 제2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환경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남북협력기 금 지원을 예년에 비해 다소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종전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영유아지원사업 등으로 세분되어 있던 사업유형을 개별사업과 정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절차·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기금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기금지원심사평가단'을 확대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구매업무 서비스 지원 및 공개경쟁입찰 활성화 추진 등 기금집행의 투명성강화에도 노력하였다.

####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1개 단체 또는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정부는 2000년 7개 사업에 33억 8,000만원의 남북협력기 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257개 사업에 총 784억 8,5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 북한의 연이은 강경조치들로 인하여 남북관계 긴장과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당초 계획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내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 하에 8월 3일과 10월 22일 두 차례로 나누어 15개 단체의 취약계층 및 영유아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45억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6월말까지 2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다.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지원액
1차(8.3 의결)	남북 나눔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등 10개 사업	3,575
2차(10.22 의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지원 등 5개 사업	949
합계	15개 사업	4,524

#### 나. 정책사업

정부는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전액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2007년에 도입하여 2008년까 지 북한산림녹화,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 3,500만원 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도 사업추진 여건 악화로 기금지원이 지연되다가 12월 28일 취약계층 지원, 산림녹화, 기초의약품 생산지원 등 6개 사업에 60억 5,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6월말까 지 6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다.





민간단체 지원물자 분배현장

#### 민간단체를 통한 정책사업 지원(2009.12.2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사업추진 단체	지원액
취약계층지원	o 어린이 영양식, 생활용품 등 지원 o 기초 의약품 지원 - 항생제, 영양제, 진단시약 등 필수 의약품, 의료소모품	우리민족서로돕기(9억원) 한국제이티에스(11억원) 남북어린이어깨동무(8억원) 어린이재단(7억원)	3,500
산림녹화	o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묘목 지원 등	겨레의 숲	1,980
기초의약품 생산 지원	o 기초의약품 생산 지원 및 GMP 교육 사업 - 수액제 등 기초의약품 생산 및 GMP교육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00
사업관리			75
합계			6,055

####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6년 이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2009년에는 2개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사업 3건에 대해 1,816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북한 말라리아 방역과 관련하여 107만 달러(질 병관리본부지원액 제외),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1,311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말라리아 방제 지원사업의 경우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 4월 7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4월 23~24일간 인도 델리에서 기술협의를 통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기장 6만장, 치료제 10만 명분, 예방약 180만 명분 등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영유아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

한 지속적인 지원방침에 따라 12월 28일 의약품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번역·출판, 모니터링 등의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기금지원을 결정하였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도 12월 28일 영유아 지원을 위해 협력기금에서 39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사업, 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 등이다.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내역

#### ① WFP(식량지원)

연도	내 역	지원액(천원)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불(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불(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불(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불(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불(235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불(191억원)
2004	옥수수 10만톤	2,334만불(240억원)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2,000만불(190억원)
계	543,950톤	12,770만불(1,434억원)

#### ② WHO(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연도	내 역	지원액(천원)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불(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불(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100만불), 영유아지원(1,067만불)	1,167만불(116억원)

2007	말라리아 방역(138만불), 영유아지원(938만불), 홍역지원(105만불)	1,181만불(111,8억원)
2008	말라리아 방역(120만불), 영유아지원(1,027만불)	1,147만불(148억원)
2009	말라리아 방역(107만불), 영유아지원(1,311만불)	1,418만불(166.5억원)
Л		5,322만불(589.6억원)

#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내 역	지원액(천원)
1996	분유 203톤	100만불(8억원)
1997	ORS공장, 분유 781톤	394만불(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10억원)
2006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230만불(23억원)
2007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315만불(29억원)
2008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408만불(47억원)
2009	영유아지원(백신, 보건, 영양)	398만불(36.6억원)
	계	2,095만불(207억원)

# ④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연도	국제기구	내 역	지원액
1996	WMO	기상 장비	5만불(0.4억원)
1997	UNDP	수해복구 장비	120만불(11억원)
1997	FAO	영농 자재	30만불(3억원)
2007	IVI	백신, 의료교육	50만불(4.6억원)
2008	IVI	의료장비 및 시약지원	49만불(7억원)
		계	254만불(26억원)

124

# 4.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별도로 정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UNFPA의 요청에 따라 2007년 6월에 동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12월 10일에 UNFPA와 「2007~2009 인구조사를 위한 북한의 기술 역량 강화」사업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UNFPA는 예비인구조사(Pilot Census)를 거쳐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조사에는 조사인원 및 북한 중앙통계기관 종사자 등 4만 4,00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북한 전역에 걸쳐 호별방문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UNFPA자문하에 자료분석 작업을 거쳐 2009년 12월 16일 북한은 2008년 인구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구조사결과 북한은 출산률이 저하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북한의 총 인구수는 2,405만 2,231명으로 남성이 1,172만 1,838명, 여성이 1,233만 393명으로 나타났다.

# 제4절 북한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같은 심각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해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북한의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

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1. 국제사회와의 협력

최근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개선조치를 촉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인권문제를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제63차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제10차 UN 인권이사회, 11월의 제64차 UN총회, 2010년 3월 제13차 UN 인권이사회 등 UN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총 4번에 걸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 2009년 제64차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요약

- o 북한 내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
- 0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 o 북한의 불안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 정부에 예방 및 구제 조치 촉구
- o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지속적인 임무수행 노력 평가
- o 북한정부에 대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
- o 65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정부는 2009년 6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안에도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2010년 6월까지 1년간 연장되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제1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개인 안보,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심각성, 여성·아동 등 특정그룹에 대한 불평등 대우 등 5개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이 여전히 비참하고 절망적이라고 평가하였다. 2010년 6월 18일 제14차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6년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해온 문타폰의 후임으로 인도네시아 출신의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을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문타폰 보고관의임기는 6월말로 만료되고, 신임 다루스만 보고관이 2010년 7월부터 1년간활동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결과 및 우리입장

구분	UN 인권위원회		UN 인권이사회		UN 총회					
연도	2003년 (59차)	2004년 (60차)	2005년 (61차)	2008년 (7차)	2009년 (10차)	2005년 (60차)	2006년 (61차)	2007년 (62차)	2008년 (63차)	2009년 (64차)
표결 결과	28:10:14 (찬:반 :기권)	29:8:16	30:9:14	22:7:18	26:6:15	84:22:62	91:21:60	97:23:60	95:24:62	97:19:65
우리 입장	불참	기권	기권	찬성	공동제 안찬성	기권	찬성	기권	공동제 안찬성	공동제 안찬성

한편, 2009년 12월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 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하였다. 인권이사회는 2008년 4월부터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를 통해 192개 모든 UN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제6차 정례인권검토회의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노르웨이 등 16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였다. 북한관련 검토회의는 북한대표와

UN 회원국들간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2개 UN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질의 및 권고를 직접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납 북자 문제를 긴급하고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정례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북한 대표단은 이산가족문제는 6.15 및 10.4선언 합의에 따라 이행하고자 노력중이나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납북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 2.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부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교육생 대상 인터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국·영문)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학술행사와 자료발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의 「북한인권 NGO 국제회의」, (사)북한전략센터 주최 학술세미나,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2009 북한인권 국제회의」등을 지원하였고,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발간『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2』(사)북한인권시민연합『생명과 인권』(계간지) 발간 등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국내외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 북한자유주간」 서울대회를 지원하였다. 인권단체들은 「2010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 중, 북한인권 관련 기자회견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향후 북한인 권 관련 국내외 다양한 행사 개최가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3. 북한인권법 동향

2008년에 발의된 북한인권 관련 4건의 의원발의 법안이 2009년에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2008년 7월 4일에 황우여 의원 등 23인이 「북한인권법안」, 7월 21일에 황진하 의원 등 25인이 「북한인권증진법안」, 11월 11일에는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2월 26일에는 윤상현 의원 등 20인이 「북한인권법안」을 제의하였다.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안)과「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안)은 2008년 11월 17일에,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안)과「북한인권법안」(윤상현 안)은 2009년 2월 19일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009년 2월 23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윤상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였으며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 다. 4월 14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7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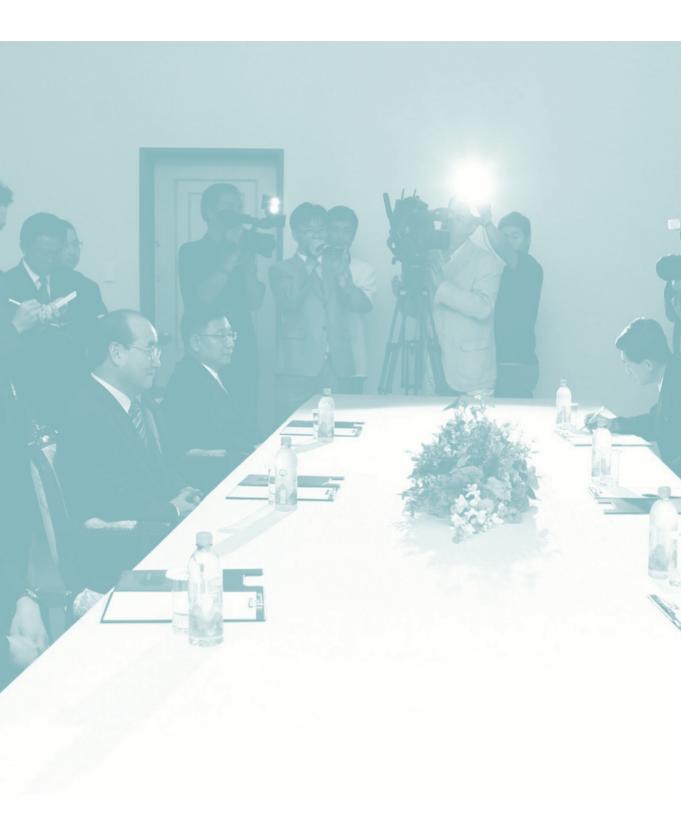


2009 북한인권 국제회의(2009.9.24)

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동 조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며, 4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북한인권법안」(대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 실태조 사, 교육·홍보,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04

# 남북대화

제1절 북한 조문단 방문

제2절 경제사회분야

제3절 인도분야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 제4장 남북대화

정부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모든 문 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런 입장 하에 정부는 계 기시마다 북한측에 당국간 진정성있는 대화를 갖자고 제의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총 9차례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공식적인 남북회담은 아니지만「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당시북한 조문단 방문을 계기로 새 정부들어 첫 고위급간 접촉과 개성공단 문제 협의를 위한 「4.21 접촉」,「해외공단 남북합동시찰 평가회의」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발하면서 남북간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판문점 직통전화도 단절되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호전성과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는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와 함께 북

한의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억류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북한 방문·체류시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 제1절 북한 조문단 방문

「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과 관련, 북한「특사조의방문단」(이하 '조문 단')이 2009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김기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비서를 단장으로 김양건「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성 명	직 위	비고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단 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리 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김은주	국방위원회 기술일꾼			

#### 주 요 일 정

o 제1일차 : 입국 ightarrow 빈소 조문(국회) ightarrow 국회의장 면담 ightarrow 김대중평화센터 방문

(이희호 여사 면담)

ο 제2일차 : 민주당 대표 면담 → 통일부 장관 면담

o 제3일차 : 이명박 대통령 예방 → 귀환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접견

8월 21일 서울에 도착한 북한 조문단은 먼저 국회에 마련된 김대중 前대통령 빈소를 조문하였다. 빈소 조문을 마친 조문단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조문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남북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7월 30일 북한측에 억류된 우리측 선원들과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였다. 김기남 비서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하였다. 이어 북한 조문단은 김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간 면담

136

대중평화센터를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된 서한을 故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에게 전달하였다.

8월 22일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간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남북관계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 조문단은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 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및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도 가졌다.

8월 2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예방한 북한 조문단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는 북한 조문단의 김기남 비서, 김양건 부장, 원동연 실장이 참석하고, 우리측에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를 김정일 위원장에게전해달라고 당부하고,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 조문단은 남북이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마친 북한 조문단은 8월 23일 오후 북한으로 귀 화하였다

# 제2절 경제사회분야

# 1.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 가. 4.21 전초

2009년 4월 21일 개성에서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접촉이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남식(통일부 회담기획부장) 문무홍(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이에 앞서 북한측은 2009년 3월 30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측 직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중이라는 통지문을 우리측에 전달하였다. 이에우리측은 관련 조사내용과 경과에 대해 상세히 밝혀 줄 것과 우리측 인원에 대한 접견권 등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우리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근로자 억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월 16일 북한측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라면서 우리측 당국과의 접촉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왔다. 이러한 접촉제안은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우리측은 근로자 억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하에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4.21 접촉」은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로 공식적인 남북회담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우리측은 북한이 3월 30일부터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를 억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남북간의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요구하였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남북합의 무효화 선언 등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리 북한측이 2008년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출입·체류 제한조치를조속히 철회하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중상·비방 등 대남비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단에서 우리측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를 전면 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토지임 대료 유예기간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 계약 재검토를 위 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우리측이 이를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은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의는 진행하지 못한 채 「4.21 접촉」을 종료하였다.

# 나.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이 2009년 6월 11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문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장기간 억류중인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사안인 만큼 억류 근 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그의 소재 및 건강상태 확인과 우리측 대표단과의 접견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주장한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의 계약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이에 영향을 받는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서 토지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문제부터 협의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토지임대료는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에 대해 5억 달러를 요구하고, 근로자 임금은 월 30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 숙소와 탁아소 및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대책도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거듭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 및 신변안전 여부 등의 확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개성공단사업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출입·체류 인원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준에서 추가로 보장"해 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남북은 제기된 의제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는 못하고 6월 19일 차 기 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혐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140

#### 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이 2009년 6월 19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혐의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개성 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협의·해결한다는 '실질적 접 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최우선 과제로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 및 우리 대표단과의 접견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억류 근로자 가족이 근로자에게 보내는 안부서신과 북한 당국에게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등 두 건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이하「3대 원칙」)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이「3대 원칙」은 그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립된 것이었다. 우리측은 「3대 원칙」을 토대로 개성공단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1. 규범 확립 원칙 :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2. 경제원리 추구 원칙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

3.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지향

특히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 확립 원칙에 따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임대료 등의 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개성공단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구체적으로 출입·체류 제한조치의 철회,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의 해결,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의 구성·가동 등을 제의하였다.

한편, 탁아소 건설 등 당면 현안문제는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리 중국·베트남 등 외국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는 성공적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외국공단을 남북이 합동 시찰함으로써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남북간 이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북한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토지임대료를 우 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억류중인 우리측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중에 있으며,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우리측의 서신전달 요구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 없다.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육로통행 및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북은 차기회담을 2009년 7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이 2009년 7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한기수(통일부 회담1과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권동혁(통일부 사무관)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상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먼저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재강조하고, 「3대 원칙」하에 개성공단 관련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 의하였다. 우리측은 지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출입·체류 제한조치 의 철회, 3통 문제의 개선,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해 결하자고 다시 한번 제의하였다. 또한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을 7월 20일부 터 진행할 것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였다. 한편, 인도적 견지 에서 탁아소 건설 문제를 즉각 협의할 용의가 있음도 표명하였다. 아울러 상 호 신뢰구축을 위해 우리측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운영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성공단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과 당면 현안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 소회담」으로 나누어 회담을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북한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지임대료 인상요구는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실질현안 협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남북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차기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